

=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6. 4. 20 . - - - - - 최광렬의원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06. 4. 2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8회 임시회(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06.5.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쌍식 의원)

가. 제안이유

공청회에 참석하는 진술인에 대하여 지급하던 실비변상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지급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지급 기준 개정(안 제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으로 신설됨에 따라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하여 지급하던 실비변상 금액을 회기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본 조례 개정안은 의회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비의 지급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 관련 조례에는 공청회에 참석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진술인에게 지급되는 일비 등의 안전심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하구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 올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으로써 기존 진술인의 참석수당 지급기준을 「부산광역시 사하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해될 수 있어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중요한 안전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전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진술인을 의회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당초 법 제정 취지와는 달리 현재까지 공청회 개최 실적 등이 극히 미비하여 다소 아쉬움이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